장애여성지원법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57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서미화·최민희·이수진

박해철 • 정진욱 • 박지원

박민규 · 권칠승 · 윤종군

박희승 · 용혜인 · 김영환

최보윤 • 이기헌 • 김예지

의원(15인)

제안이유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 어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이 소외와 배제 되어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 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안 제6조).
- 다.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성·재생산 건 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교육 지원, 가족 지원, 고령장애여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장애여성지원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애여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종사자에게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혐오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등에 장애여성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 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책,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제3항에 따른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여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 장애의 유형, 비혼·독거 여부, 희귀유전질환의 유무 등 장애여성의 특성과 장애여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 기별 장애여성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장애여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쉬운 자료 등장애의 유형·정도·특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 애여성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장애인복지법」 제10 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애여성의 복지에 관한 사항

- 2. 장애여성의 교육에 관한 사항
- 3. 장애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에 관한 사항
- 4.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 5. 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 6.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 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 7.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성·재생산 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장애여성정책의 기본방향
 - 2. 장애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3. 장애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 4. 장애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 방안
 - 5. 그 밖에 장애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둔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9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교육에서 차

별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장애여성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 1. 산전 · 산후 건강 관리
 - 2. 출산비용 지원
 - 3.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 4.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 5. 자녀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 6. 그 밖에 장애여성 모성보호에 필요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모계유전질환을 가진 장애여성이 임신을 원할 경우 산전 검사 및 시험관 시술, 난자의 유전성 여부 검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여성의 희귀모계유전질환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성·재생산 건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유지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장애여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장애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도록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훈련, 직종 개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여성(「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여성인 사람을 말한다)의 사회참여 기회 및 고 용 확대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를 예 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및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피해 지원기 관 및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기관이 장애여성 관련 지원기관과 연 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성인권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성인 권을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5조(정신장애여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여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6조(고령장애여성 지원) ① 국가는 고령장애여성(60세 이상인 장애여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고령장애여성을 위한 요양전문병원과 시설을 확충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고령장애여성에게 고령장애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고령장애여성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안내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장애여성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원하는 가족을 이루어 평등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그 가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여성 가족 인식개선 지원

- 2. 장애여성 가족 돌봄 지원
- 3. 장애여성 가족 사례관리 지원
- 4. 장애여성 가족 역량강화 지원
- 5. 장애여성 가족 상담 지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여성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 애여성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장애여성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장애여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 의 문화예술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여성 예술인 또는 장애여성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장애여성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장애여성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개발 등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국민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종사자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2. 일반 국민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여성에 대한 성교육
 - 4.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이해증진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5. 그 밖에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그 밖에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장애여성교육진흥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여성교육진 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
- 2. 장애여성의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
- 3.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4.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 5.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6. 그 밖에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여성교육진흥 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24조(정신장애여성 전문상담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정신장애여성에 특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장애여성 전문 상담소(이하 "전문상담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지원센터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 ② 전문상담소의 지정기준 등 전문상담소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정신 장애여성에 특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이 하 "전문보호시설"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지원센터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 ② 전문보호시설의 지정기준 등 전문보호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지원센터, 전 문상담소 또는 전문보호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 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여성교육진흥원, 지원센터, 전문상담소 또는 전문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4. 그 밖에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여성교육진 흥원, 지원센터, 전문상담소 또는 전문보호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비밀 엄수의 의무)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 흥원, 지원센터, 전문상담소 또는 전문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지원센터, 전문상담소 또는 전문보호시설이아니면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 합지원센터, 정신장애여성 전문상담소, 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를 위반하여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정신장애여성 전문상담소, 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